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35
------	------

제출일자 : 2022.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2. 9. 6. ~ 2022. 9. 26.) 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 1. 제안이유

표창 대상을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표창사실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표창의 재교부 요청 시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 로 한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 확대 (안 제2조)

나.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6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를 “기관·단체(기업체를포함한다)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6조) 중 “단체”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장·상장·감사장·구민상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표창사실 확인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	
수여자	성명	
	수여 당시 소속	
용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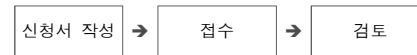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제시 -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금천구청 (상훈업무 담당부서)

# 표창사실 확인서

## 신·구조문 대비표

수 상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 )
	수 여 당 시 소속 또는 주소		
수 여 내 역	표 창 종 류	표 창 훈 격	
	표 창 번 호	표 창 일 자	
	공 적 요 지		
용 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의 수상자에 대한 표창 수여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관인)

현 행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
<신 설>
제16조 (생 략)
<신 설>

## 표창사실 확인서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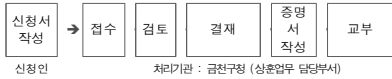
접수번호	신청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	
	7	
수여자	성명	생년월일
	수여 당시 소속	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
용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제시 -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표창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표창수여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표창사실 확인 조항 신설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박미란
연 락 처	2627 - 1014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구민상)** ①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금천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부문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의2의 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구청장이 위촉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다.

②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③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6조(준용규정)** 공무원, 구민 및 단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